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2007. 10. 4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의 금액에 맞게 조례상의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간결하게 변경

- 현 행 제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개정안 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나.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 조정 (안 별표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2,000원	3,000원	1,000원 인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50,000원	100,000원	50,000원 인상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병원)	10,000원	40,000원	30,000원 인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원)	20,000원	40,000원	20,000원 인상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0,000원	20,000원	10,000원 인상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20,000원	30,000원	10,000원 인상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5,000원	20,000원	15,000원 인상
체육시설업 신고	20,000원	30,000원	10,000원 인상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20,000원	10,000원	10,000원 인하

다 수수료 면제는 타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
(안 제5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체계상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일부 제증명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과 수수료 감면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 먼저, 제증명 수수료 요율 조정건은

2007. 10. 4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명시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우리구 조례상의 수수료를 바꾸려

는 것으로

조정대상 수수료는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등 9건이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8건이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1건

으로

개정안 대로 조정할시 우리구 세입에는 미약하나마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다음, 수수료 감면대상의 제한건은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에 발급하는 제증명과

지역예비군 동대장, 통장 등에 제공하는 공부 열람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원칙하에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한 것은

행정정보의 보호와 세입증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008. 3. 20.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선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07. 10. 4>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건당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10,000원